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나1529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윤세훈

피고, 피항소인 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가소23283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1) 2018. 3.경 신축 건물인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점포에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찜질방이, 지상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는 H 및 피고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외식업체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었다.

2) 피고 C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다가, 2018. 1. 26. 대표이사를 사임한 자이다. 3) 그런데 주식회사 I가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8. 6. 1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컨설팅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제1조(업무범위)

피고 C는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의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전략의 구성
2. 부동산 임대 관련 계약서 작성
3.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
4. 기타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데 필요한 경영 자문
5. 관련 컨설팅의 유지보수 기간은 위 점포를 개점하기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한다.
6. 컨설팅 업무의 종료 시점은 위 주소지의 매장을 개점하기까지로 한다.

#### 제2조(일반조건)

##### 5. 컨설팅 수수료

본 위임계약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는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4) 그 후 원고 A(주식회사 J)은 원고 회사, 주식회사 K(대표자 L)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 가칭 'M'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점하기로 하였다.

####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F은 2018. 9.경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1)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18. 10. 31.), 기본 임차료 월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갑 제7호증, 을가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은 '임대인 N', '임차인 원고 회사'라고 부동산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N의 날인을 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 F이 원고 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원고 회사의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은 N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N을 대리한 F에게 도달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회사의 날인 후 N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F은 이 사건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임대인인 N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2018. 10. 31.까지 원고 회사에 입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위 5천만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 회사는 공동 입점자들을 대표하여 2018. 9. 17.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 기간 2018. 9. 18.부터 2018. 10. 27.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8. 9. 21. 피고 회사에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4,5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 입점 계획의 무산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N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000만 원도 그 지급기일인 2018. 10.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면을 수정하던 중인 2018. 11. 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오늘 3D도면 몇 시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라고 묻자, 피고 회사는 “진행 안 하고 있는데요?”라고 응답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임대인인 N은 2018. 11. 하순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7, 9, 10, 16, 18, 19호증, 을가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는 피고 C가 'O 감독의 영화와 광고에 원고들의 카페가 노출되게 하여 홍보해줄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 C는 원고의 카페를 O 감독의 작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C와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컨설팅 수수료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영화를 통한 홍보 의무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 C에게 표시하였다거나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위와 같은 의무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N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2)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인지 물랐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하여, 인테리어 도면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착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드러나지 않은 점, 그 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모와 내용 등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무등록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테리어 도면을 추후에 수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8. 10. 16. 피고 회사로부터 도면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5. 수정된 도면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해지 및 해제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1)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피고 C가 위 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경영 자문을 제공할 의무 등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피고 C의 채무가 사회통념상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8. 11. 1.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3),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가 사회통념상 그 이행이 불가능해져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또는 청산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 및 공사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지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도 원고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착공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컨설팅 및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이행불능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N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000만 원도 그 지급기일인 2018. 10.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8. 10. 12. 원고 측 공동입점자인 주식회사 K의 L, 원고 회사의 P, 피고 C 등이 단체 카톡방을 열어 계약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10. 24. 회의를 통해 ‘피고 C가 피고들을 대표하여 같은 달 26. 오후 3시까지 평면도와 3D도면을 원고 측에 보내주고, 원고 측은 같은 달 28.까지 착수금 중 나머지를 입금하고, 피고들이 같은 달 29.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되 세부내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한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2018. 10. 25. 기초적인 수준의 평면도만 원고들에게 보낸 후, 같은 달 26. 보내주기로 한 3D도면을 아무런 연락 없이 원고 측에 보내주지 않은 사실(피고들이 제공한 것은 다른 업체에 대한 3D도면임, 갑 제15호증의 1, 2), ③ 이에

원고 측이 2018. 11. 1. “오늘 3D도면 몇 시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진행 안 하고 있는데요?”라고 응답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렇게 점포 입점에 진척이 없게 되자, 2018. 11. 23.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N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을 무효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⑤ 원고 측은 2019. 1. 7.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안 되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카톡을 보냈고, 2019. 1. 14. 이 사건 공사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⑥ 한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F이 협약과 달리 원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원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가 달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⑦ 원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2018. 11. 1. N에 이행지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이행을 거절한 점, ⑧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인테리어 도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면을 확정된 이후 나머지 공사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에 계속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도 나머지 공사 계약금을 도면 확정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 회사의 공사 계약금의 미지급이 원인이 되어 인테리어의 착공이 지연되거나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입점 무산으로 인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의무와 공사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불능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원상회복의 범위

#####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산) 범위

원고 A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전부와 그 지급일 이후의 이자를 반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둔 일종의 위임 유사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8. 22.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피고 C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위임사무 처리 중에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수임인이 위임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이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미 2018. 3.경 이 사건 점포에 외식업체로 입점하려고 하였다가 자금 사정으로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려는 원고들과 2018. 6.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적인 수준의 평면도를 제공하였을 뿐 상호 협의해서 정한 기일인 2018. 10. 26. 원고 측에게 3D도면을 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8. 11. 1. 원고 측으로부터 거듭 위 도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공사에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들의 입점에 진척이 없자 임대인이 2018. 11. 하순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행한 사무처리가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 C는 지급 받은 컨설팅계약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위 수수료 지급일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도 연 5%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계속적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일부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해소에 따르는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해지일 이후의 지연이자만의 지급을 명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0772 판결 참조).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 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일부 인테리어 도면(평면도) 등을 제공하였을 뿐 3D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입점이 무산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제공받은 일부 도면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도면은 원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로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회사에 지급받은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 계약금을 입금한 2018. 9. 2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헌

- 1) 공동 입점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J, 원고 회사, 주식회사 K을 대표하여 원고 회사가 체결하였다.
- 2) 갑 제9호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H, 임차인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재가 착오로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 회사가 피고 C를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